

#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운영 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형예술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**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**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조형예술학과 소속 교수들은 조형예술학과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**제4조 (교육과정)** 조형예술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**제5조 (과목개설)** 조형예술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 조형예술 연구에 필수적인 아래의 교과목은 학위과정 중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.

## 제4장 논문지도

**제6조 (지도교수의 선정)**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## 제5장 자격시험

**제7조 (외국어시험 과목)**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로 인한 면제 신청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

연번	학 과	과정	내 국 인		외 국 인		비 고
			선 택 과목수	선 택 과 목 명	선 택 과목수	선 택 과 목 명	
1	조형예술	박사	1	영어(필)	1	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국어, 노어, 서반아어	

##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### 제8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#### 1. 박사학위청구전

36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자격시험,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후, 논문 제출 자격 취득과 **실기전공 박사학위PHD/DR**를 위하여 학위논문과 관련된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전시는 개인전 혹은 공모에 당선된 초대 개인전이여야 한다.

#### 2. 전시회 평가

전시회 기간 동안 서양화과 전임교수 전원의 평가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 학위논문 발표의 자격을 갖춘다. 전시회 이후에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할 수 있다.

#### 3. 전시회 조건

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장소, 작품 주제, 작품 수 등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여 전시를 개최한다.

전시회 작품은 논문의 주제와 동일하여야 하며, **화방사용규격호수** 1000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여야 한다.

설치 혹은 영상작품의 경우에는 평면작품 1000호에 준하는 작품을 발표하며, 영상작품은 기획서, 드로잉 사본, 시각자료/텍스트의 프린트물, 동영상DVD 등 제작 자료를 전시 개최 1주일 전에 전임교수에게 전달한다.

#### 4. 전시회 도록

전시 도록에는 반드시 발표 작품의 3분의 2이상의 이미지, 평론 혹은 본인의 작품 주제와 관련된 글을 삽입하고,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.

#### 제9조 (예비발표)

##### 학위논문 예비발표

학위논문 예비발표의 과정을 통해 본 심사를 결정하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한다. 예비발표 일정이 결정되면 7일 이전에 논문의 초안(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제외)과 발표자료를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.

제10조 (논문심사위원)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###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1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